

議案檢討報告

1. 發議 또는 提出者 : 大田直轄市長
2. 件名 : 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(案)
3. 案件要旨 : 別添 參照
4. 檢討意見 : 別添 參照

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.

1991. 12

內務委員會

專門委員 安鍾贊



大田 開發 公社 設置 條例(案)

檢 討 報 告

이 條例案은 1991. 12. 6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1. 12. 6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.

1. 提 案 理 由

本 條例는 大田開發公社의 設立과 運營에 關한 規程을 定함에 있어 公社의 資本金 및 株式, 組織과 業務, 財務會計 等に 關한 事項을 規定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음.

2. 主要 骨字 (7章, 本文第41條, 附則第4條로 構成)

가. 第 1 章 總 則

- 公社의 性格은 法人으로 함(案第2條)
- 公社의 資本金은 授權資本金 30億원, 設立資本金은 授權資本金의 ¼以上으로 함(案第4條)
- 公社의 株式發行은 記名式 普通株로 하고 1株權의 金額은 5,000원으로 하고 總 發行 株式은 60萬株로 함(案第5條)

나. 第 2 章 任員 및 職員

- 社長은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大田直轄市長이 任免함 (案第10條 第2項)

- 理事 및 監事는 大田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 社長이 任免함.
(案第10條 第2項)
- 社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, 監事の 任期는 2年으로 하되
各各 1회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도록 함(案第11條)
- 公社의 重要한 事項을 審議· 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
두도록 함.(案第17條)

다. 第 3 章 業 務

- 公社의 目標를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業務를 行할 수 있
도록 함.(案第19條)
 - ① 建設資材 生産 및 販賣
 - ② 駐車場 管理 事業
 - ③ 淸掃 衛生 事業
 - ④ 都市 및 地域開發 關聯事業
 - ⑤ 河川 關聯 事業
 - ⑥ 其他 自治團體가 委託하는 事業
- 經營評價는 大田直轄市長이 年1回以上 評價하도록 함
(案第22條)

라. 第 4 章 財 務 會 計

- 公社의 事業年度는 一般會計에 準하도록 함,(案第23條)
- 公社는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年度 開始 1月前에 大田
直轄市長에게 提出· 承認을 얻도록 함.(案第24條)

· 公社は 決算結果 利益이 생긴 때에는 다음 順序에 따라 處理하도록 함.(案第27條)

- ① 移越 缺損金の 補填
- ② 株主에 대한 利益 配當
- ③ 事業 準備金の 積立

마. 第 5 章 起 債

· 公社は 大田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 社債를 發行하거나 外國 借款을 導入할 수 있도록 함.(案第33條 第1項)
· 社債의 總額은 資本金의 2倍를 超過하지 못하게 함.
(案第33條 第2項)

바. 第 6 章 監 督

· 大田直轄市長은 公社の 業務를 監督하도록 함.
(案第35條第1項)
· 公社は 다음 事項에 대하여는 大田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야 함(案第35條 第2項)

- ① 機構 및 定員에 關한 事項
- ② 任員 및 職員의 給與 및 退職手當 支給基準에 關한 事項
(이 경우 長官의 事前承認 要)

③ 人事規程, 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規程 等

사. 第 7 章 補 則

- 大田直轄市 以外の 者が 出資한 경우에는 이 條例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商法中 株式會社에 關한 規程을 準用하도록 함. (案第37條)
- 大田直轄市長은 必要한 경우 公社定員의 1/10 範圍內에서 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도록 함. (案第39條)

아. 附 則

- 公社의 最初의 事業年度는 公社設立日로부터 그 해 12月 31日까지로 함. (附則案第2條)
- 公社 設立時 直轄市의 出資額은 15億7千萬원으로 하고 必要時 增資할 수 있도록 함.(附則案第3條)
- 公社가 設立될 때까지 公社設立에 必要한 經費는 直轄市 一般會計에서 支出하도록 함.(附則案第4條)

3. 檢 討 意 見

本 條例案은 EXPO '93을 앞두고 地域開發事業의 財政需要가 擴大됨에 이를 解決하고 自治團體의 財政負擔을 輕減하여 地域經濟活性化와 均衡發展에 이바지하고자 地方財政法 第138條 및 地方公企業法 第49條에 根據를 두고 地方公社를 設立하는 (假稱)大田開發公社의 設立과 運營에 關한 條例案으로써

- 첫째 : · 公社의 性格은 法人으로 하고 (案第2條)
 - 資本金은 30億원 設立資本金은 授權資本金의 ¼以上으로 하였으며(案第4條)
- 둘째 : 株式의 發行은 記名式 普通株로 하고 1株權의 金額은 5,000원 總發行 株式은 60萬株로 함. (案第5條)
- 셋째 : · 任員中 社長은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大田直轄市長이 任免하고 理事와 監事는 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 社長이 任免토록 하였으며(案第10條第2項)
 - 社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各 1회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도록 함.(案第11條) 이는 地方公企業法 第49條3項과 第59條1項의 規定에 의한 規定으로 思料됨.
- 넷째 : 公社의 業務로는 建設資材生産販賣, 河川開發, 都市 및 地域開發 關聯事業等 公益性和 收益性 事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地方公企業法 第2條및 施行令第2條의 規程에 의한 事業이나 建設資材生産販賣는 議會議決을 要하는 事項이 되겠음.(案第19條)
- 다섯째 : · 公社의 財務會計는 一般會計에 準하도록 하고 (案第23條)
 - 事業計劃및 豫算書은 市長의 承認을 얻어 施行토록 하였으며(案第24條)
 - 損益金의 처리는 移越缺損金을 補填하고 다음은 利益金을 配當하고 餘음이 있을 時 事業準備金으로 積立토록 함(案第27條)
- 여섯째 : 社債는 資本金의 2倍를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 社債를 發行하거나 外國借款을 導入할 수 있도록 하고(案第33條第1,2項)

- 일곱째 : · 大田直轄市長은 公社를 監督하도록 하고
(案第35條第1項)
 - 機構 및 定員과 人事, 財産의 管理處分은 市長의 承認事項으로 規定하고 任員및 職員의 給與, 退職 手當 支給基準은 長官의 事前 承認을 得하여 旅行 托록 함.(案第35條第2項)

- 여덟번째 : · 補則으로 大田直轄市以外的 者가 出資한 경우에는 本條例에 規程한 것을 除外하고는 商法中 株式 會社에 關한 規程을 準用토록 하고(案第37條)
 - 直轄市長은 必要하다고 認定될 경우 公社定員의 1/10範圍內에서 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도록 한 바 地方公務員法上 抵觸되지 않는다고 思料됨.
(案第39條)

- 아홉번째 : · 公社의 最初 事業年度는 公社設立日로부터 그해 12月31日까지로 하고(附則案第2條)
 - 公社設立時 直轄市の 出資金은 15億7千萬원으로 하고 必要時 增資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(附則案第3條)
 - 公社設立時 必要한 經費는 直轄市 一般會計에서 支出토록 規程되었습니다. (附則案第4條)

以上の事案を 살펴건데 '91年度 一般會計 豫算案에 의하면 出資金18億원이 計上되어 있어 附則에 의한 設立時 出資金 15億7千萬원과는 相違되는바 相互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되며, 本 案件의 設立根據가 되는 地方公企業法 및 地方財政法에 抵觸되지 않는 條例案이 되겠으며, 地方公社設立에 目的과 그 事業이 地方自治團體의 財政運營上 매우 바람직한 案이 된다고 思料됨.